의안 번호 1365

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연월일 : 2017. 5. 31. (수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회부 : 2017. 6. 1.(목) 라. 위원회심사 : 2017. 6. 9.(금)

2. 개정이유

○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반영하고 상위·관련법령인 「경관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과 상충되는 규정 정비,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경관사업추진협의체 및 경관위원회 구성 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 및 용어정비(안 제10조, 안 제20조)
- 나.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예외규정 명확화 및 자문ㆍ재자문 규정 완화(안 제19조)
- 다.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과제 반영에 따른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 삭제(안 제22조)

4. 근거법규

가. 「경관법」 제29조

나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
5. 검토의견

- 상위·관련법령인 「경관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부합되게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·보완 및 법제처 자치법 규 정비기준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〈관계법령〉

□ 경관법

- 제29조(경관위원회의 설치)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. 다만, 경관위원회를 설치·운 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·군수, 행정시장,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(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)가 속한 시ㆍ도에 설 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·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(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 다. 이하 같다)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.

□ 양성평등기본법

-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 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(이하 이 조에서 "관리직 목표제"라 한다)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,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 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